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9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불합리한 조항 개정
- 중복적 조목 존치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위함

□ 주요골자

- 충청북도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의 교부정지 또는 취소 조항의 중복부분 통합.

□ 첨부

-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중 “다만, 도지사가 아니한다”의 단서삭제

제18조중 “명 할수 있다”뒤에 “다만, 7호내지 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 할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8조중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설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태만으로 말미암아 설계내용에 하자가 있을때

8. 공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 말미 암아 공사에 하자가 있을때 를 신설한다.

제19조(동전)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4조(보조율)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u>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18조(보조금 교부의 정지 또는 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에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근대화 촉진사업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 	<p>제4조(보조율) ①</p> <p>제18조(보조금교부의정지 또는 취소) 도지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u>다만, 7호 내지 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u></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때 4. 사업성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때 5.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때 6. 허위의 수단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때</p>	<p>3. 생 략 4. " 5. " 6. " <u>7. 설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u> <u>실이나 업무상 태만으로 말미암</u> <u>아 설계내용에 하자가 있을때</u> <u>8. 공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대</u> <u>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u> <u>말미암아 공사에 하자가 있을때</u></p>
<p>제19조(동전) 도지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 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 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설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태만으로 말 미암아 설계내용에 흠이 있을 때 2. 공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 으로 말미암아 공사에 흠이 있 을 때</p>	<p>삭 제</p>